

KDI 공공투자관리센터

조세특례조사

Tax Expenditure Evaluation

Welcome to the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(PIMAC) at the KDI, a gatekeeper to public procurement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projects in Korea!

1. 개요

1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의 수행
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42조와 동법 시행령 제13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특례에 대한 사전 및 사후적 관리를 할 수 있으며, 조세지출평가 사업은 사전적 개념의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와 사후적 개념의 조세특례 심층평가 사업으로 구분하여 수행하고 있음.

2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목적

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는 신규로 도입하려는 조세특례를 대상으로 하며 도입의 필요성 및 적시성, 기대효과,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평가함으로써 정책결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3 조세특례 심층평가 목적

조세특례 심층평가는 의무심층평가와 임의심층평가로 구분되며, 해당 평가대상 조세특례의 운용 성과를 점검하고, 그 결과를 일몰여부의 결정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함.

4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의 수행 근거

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 사업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개정(2014년)을 통하여 2015년부터 연간 300억원 이상의 신규건의 예비타당성조사와 일몰도래 조세특례에 대해서 심층평가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.

2. 대상사업

1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

•대상사업

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는 신규 조세특례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, 기존조세특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추가되는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실시함.

•면제대상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제·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
 - 가. 경제성장률·고용률 등의 경기 지표가 하락하는 등 경제 전반에 상당한 위축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
 - 나. 특정 산업부문 또는 생산·고용·투자 등 특정 경제활동에 상당한 위축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
 - 다. 소득 격차 확대, 빈곤율 증가 등 주요 사회지표가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
 - 라. 그 밖에 대내외 경제·사회적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
2.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·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
3. 국제대회나 국가행사 등 지원 기간이 일시적이고 적용기한이 명확하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
4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42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조세특례를 개선하려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같은 법 제142조제4항에 따른 평가 내용에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제8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

2 조세특례 심층평가

•의무심층평가

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는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(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함.)으로서 연간 조세특례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실시함.

1. 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
2.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·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
3. 최근 3년 이내에 심층평가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규모와 적용대상 등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에 중요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

2. 대상사업

•임의심층평가

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세특례에 대해서 실시할 수 있음.

- 1.유사 목적의 조세특례들로서 분야별로 일괄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
- 2.향후 지속적 감면액 증가가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조세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사항
- 3.«조세특례제한법» 제142조제3항에 따른 조세특례에 대한 의견서의 확인·점검 결과 심층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사항
- 4.지속적인 조세특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미흡했다고 판단 되는 사항
- 5.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심층적인 분석·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1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

•대상사업의 선정원칙

기획재정부장관은 각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요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선정할 수 있음.

•예비타당성조사의 요구

각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조세특례를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8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여야 함.

다만, 신규 조세특례의 도입이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.

•직권 선정

기획재정부장관은 「국가재정법」 제88조에 따른 국세감면율 관리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42조제1항에 따른 「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요구가 없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.

•대상사업 선정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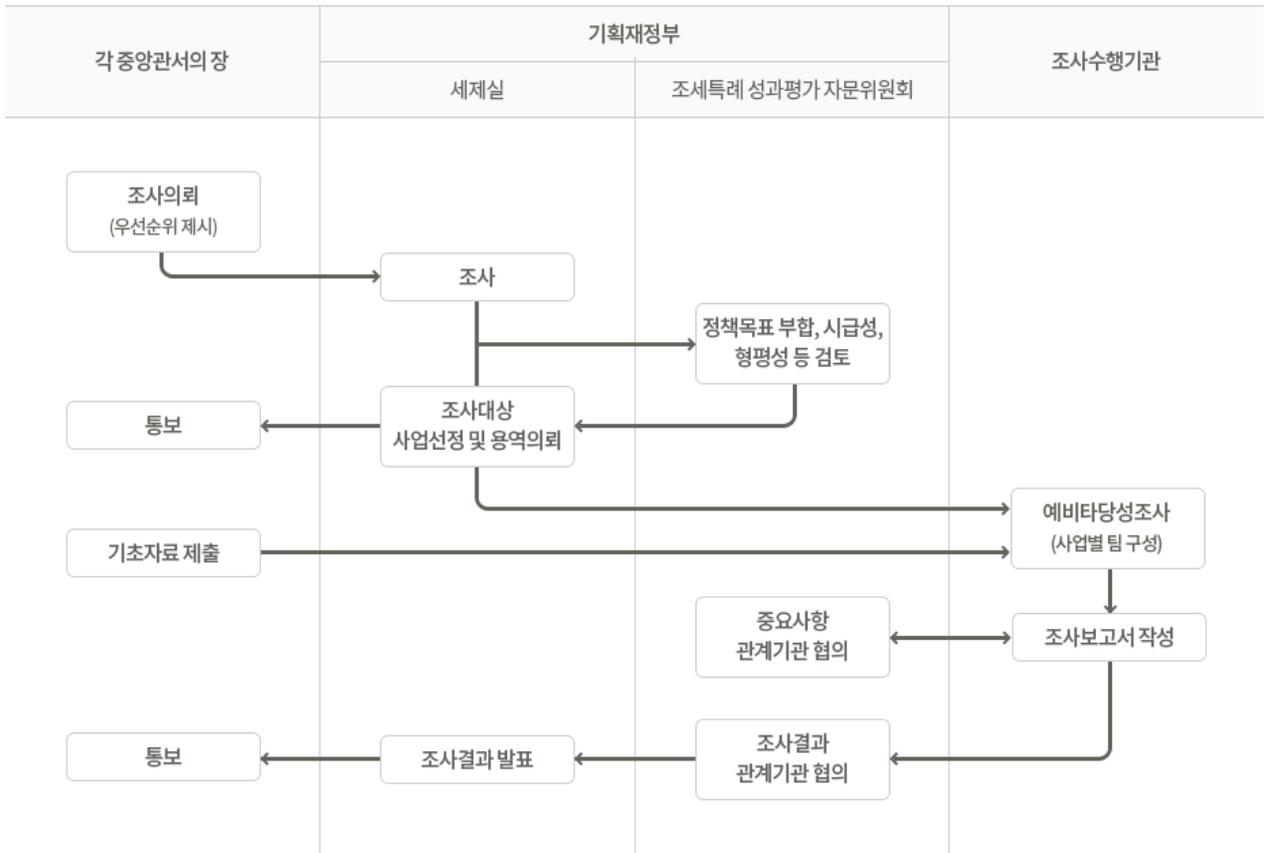
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예비타당성조사 요구내용을 검토한 후,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함.

•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

기획재정부장관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35조의2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적인 조사·연구 수행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.

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
2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
3. 그 밖에 조세특례의 평가 등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전문 인력과 조사·연구 능력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

3. 수행체계



2 심층평가 수행체계

•대상사업의 선정시기

심층평가 대상은 매년 9월에서 12월 사이에 한차례 선정하나, 평가 필요성,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선정할 수 있음.

•심층평가대상 선정절차

기획재정부장관은 심층평가 대상사업의 심층평가 필요성 및 가능성 등을 선정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심층평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,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대상을 선정함.

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심층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세특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심층평가 실시를 건의할 수 있음.

•임의심층평가 사정예고제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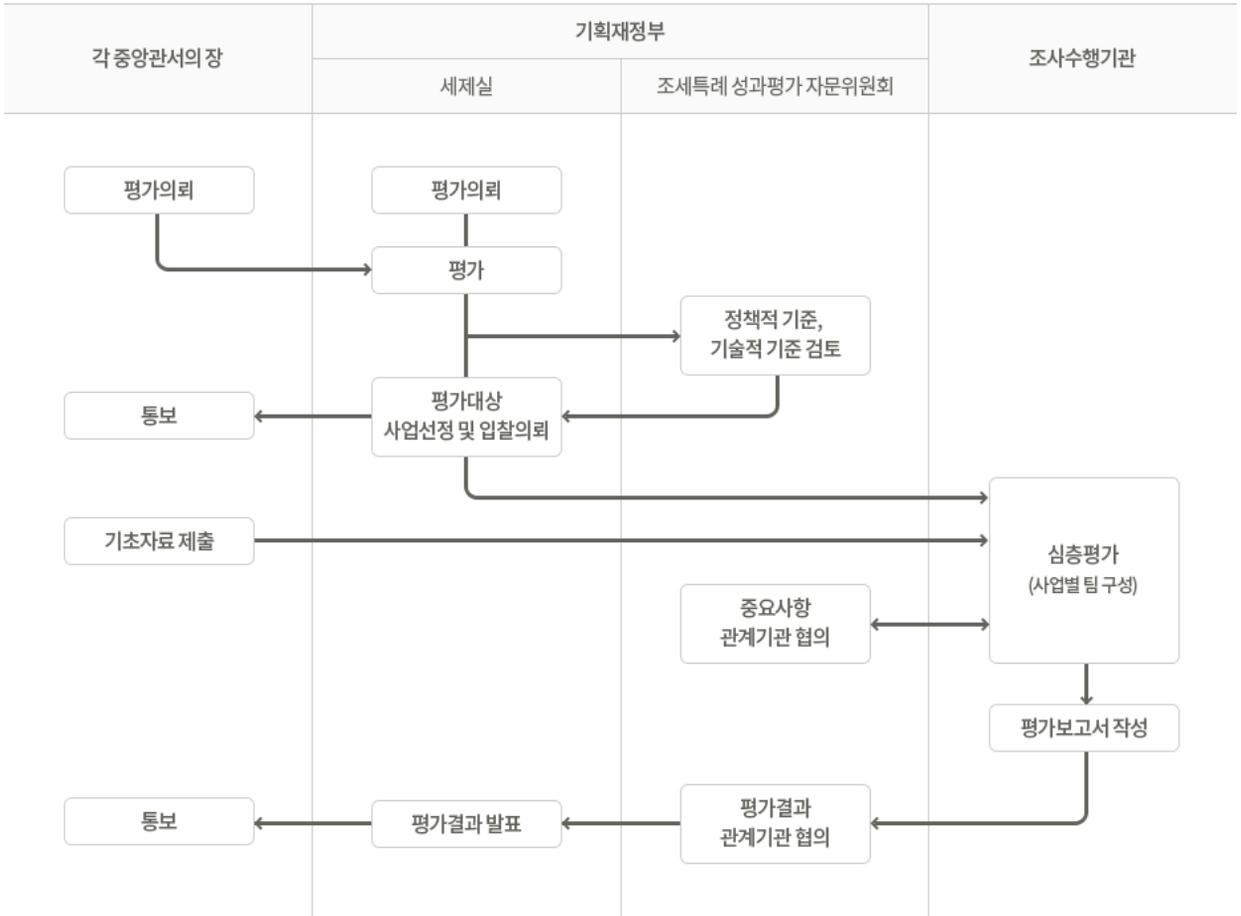
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대상 선정 과정에서 정책적 기준을 충족하나 관련 자료가 축적되지 않는 등, 기술적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해당연도에 평가를 실시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향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심층평가 실시를 사전에 예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를 축적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.

•심층평가 수행체계

기획재정부장관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제135조의2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적인 조사·연구 수행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.

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 조세재정연구원
2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 개발연구원
3. 그 밖에 조세특례의 평가 등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전문 인력과 조사·연구 능력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

3. 수행체계



4. 분석내용

1 예비타당성조사

• 분석내용

- (현황 및 기초분석) 제도의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검토, 국내외 유사제도 소개 및 관련 자료 확보
- (정책성 분석) 정책적 일관성, 사업목표, 정책대상 및 사업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 등에 대한 정성적 분석
- (경제성 분석)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·편익(비용·효과) 추정을 통한 정량적 분석(B/C 분석)
- (형평성 분석) 가구·기업·지역 등 사회 각 분야의 소득재분배 영향, 낙후지역 파급효과 등을 분석
- (종합평가) 부문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계층화분석법(AHP; Analytic Hierarchy Process) 수행

2 심층평가

• 분석내용

- 현황 및 기초분석: 제도의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검토, 국내외 유사제도 소개 및 관련 자료 확보
- 타당성 분석: 정부 개입논리 파악, 제도의 정책목표 및 운영의 적절성 등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정성적 분석
- 효과성 및 효율성 분석: 목표 달성도, 경제적 효과, 소득재분배 효과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정량적 분석, 제도의 비용 대비 정책 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 혹은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 여부에 대한 정성적 분석
- 정책 제언: 조세특례 성과 저해 요인 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제시

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 수행실적(착수기준)

연도	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건수	조세특례 심층평가 건수
2015	1	-
2016-	1	8